

문예교육과 담당

201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2015. 2.

경기도교육청

목 차



2015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 I. 추진 배경 ... 1
- II. 추진 방향 ... 1
- III. 추진 근거 ... 2
- IV. 교육과정 편성 ... 2
- V.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 3
- VI.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 10
- VII.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협조 사항 ... 15

- <붙임1> 봉사활동 각종 서식 ... 16
- <붙임2>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시간 인증 기준 ... 18
- <붙임3> 봉사활동 추진체계 ... 22
- <붙임4> 자주하는 질문(Q&A) ... 23
- <붙임5> Dovol(두볼)-나눔포털 봉사활동 실적 연계 안내자료 ... 28

I. 추진 배경

- 자원봉사진흥 제2차 국가기본계획('13~17) 수립과 연계하여 학생 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학생 봉사활동 운영
-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안내와 지원체제 강화
-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을 제공하여, 학생 봉사활동 실적 관리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

II. 추진 방향

-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학교교육과 학생봉사활동을 연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 지역 봉사활동 기관과의 연계 강화 및 학급, 동아리, 가족 중심의 지속적인 봉사활동 추진
- 학생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인성함양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자기주도적 봉사활동(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실천
- 국가 인정 봉사활동 기관과 연계한 학생 봉사활동 지도 및 관리로 실적 부풀리기 등 비교육적 행태 개선
- 학생 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

III. 추진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5조)
-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기본계획(안전행정부,2013~2017)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IV. 교육과정 편성

- 편성의 중점
 - 봉사활동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일관성 있게 실천되도록 한다.
 - 봉사활동 연간 계획에 의거 각 소 영역별로 연간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 활동 내용이 학생 중심으로 계획, 운영, 평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교사 위주의 고정적, 획일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자발적이며 자율적인 활동이 되도록 한다.
 - 봉사활동 교육과정 시간이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 봉사활동의 조직단위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장소 등을 고려하여 소집단, 학급, 학년,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단위로 조직한다.
- 활동 내용과 시간 배당
 - 봉사활동은 기본적인 시간만 교육과정 시간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심화과정으로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봉사활동 연간 시간배당은 활동 내용별로 학년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년 초에는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봉사활동은 학년의 수준에 따라 교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서 시작하여 점차로 교외로 나가 활동 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적합한 소 영역과 관련된 활동을 하도록 편성한다.
- 학교 밖에 나가 활동하는 봉사활동은 특성상 집중적으로 시간 운영을 할 수 있다.
- 봉사활동 프로그램별로 학생의 수준과 계절, 장소를 고려하여 실시 시기를 정하여 편성한다.

□ 봉사활동 시간운영

- 학생봉사활동은 연간 초등학교는 10시간, 중·고등학교는 20시간 내외로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봉사활동은 형편에 맞도록 계획하고 개인별 보다는 단체별(학년, 학급, 그룹)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V.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 초·중·고등학교는 매 학년 초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 학교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이 교육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교 봉사활동 계획에는 봉사활동 지도·운영·평가계획을 반영한다.
- 학교의 실정, 지역사회의 여건과 활동 대상기관의 관계를 고려한다.
- 학교 급별 및 학년별로 봉사활동 내용·시간 등을 다양하게 한다.
- 봉사활동은 학생 중심으로 계획·실행·평가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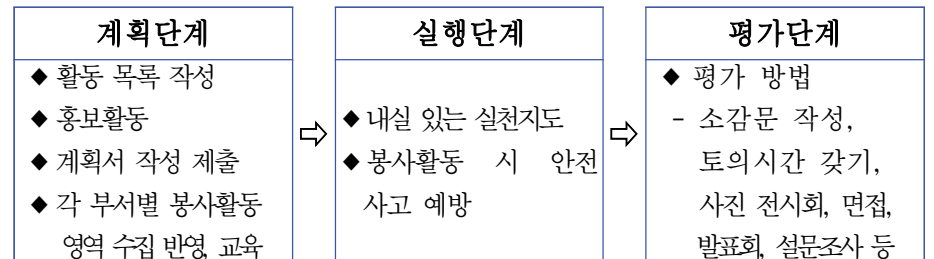
□ 봉사활동 영역

구분	영역	활동별 내용 예시
봉사 활동	교내 봉사활동	학습부진 친구, 장애인, 병약자, 다문화가정 학생 돕기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농어촌 등에서의 일손 돕기 등 불우이웃돕기, 고아원, 양로원, 병원, 군부대에서의 위문 활동 등 재해 구호, 국제 협력과 난민 구호 등
	자연환경 보호활동	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 보호, 식목 활동,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 공공시설물, 문화재 보호 등
	캠페인 활동	공공질서, 교통안전, 학교 주변 정화, 환경 보전, 헌혈, 학교폭력예방, 각종 편견극복 등에 대한 캠페인 활동 등

- 교육과정에 제시된 봉사활동은 학생의 수준 및 학년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실천 가능한 것인지를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 학생들에게 남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이 중요함
- 봉사활동은 학교가 계획을 세워 운영하는 봉사활동(학교 봉사활동)과 개인의 선택에 의해 참여하는 봉사 활동(개인 봉사활동)으로 구분됨
- 학교 봉사활동은 학교가 봉사 활동의 날을 지정하여 전교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기도 하고, 공인된 기관을 지정하여 소집단 또는 개인별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도 있음
-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일회성의 행사, 시간 때우기 식의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편성하는 일이 중요함

□ 학교 단위 봉사활동

- 학교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으로 학교의 연간 계획에 의해 추진하며, 학년 단위, 학급 단위 또는 그룹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



□ 학교장이 허가한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다.(학교장의 승인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에듀팍 모두 기록 불가)
- 학생 개인이 봉사활동을 계획하고자 할 때 학급담임교사의 지도와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유의 사항
 - 가정과 연계하여 가능한 한 가족 동반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봉사활동 지도와 관련하여 계획추진, 실적발급, 누가기록부 관리 등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는 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활용한다.
 - 봉사활동에 대한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봉사관련단체나 공공성 인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가급적 심화과정으로 활동하도록 지도한다.
 -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봉사활동 시간, 장소, 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유선으로 연락하여 확인한다.

□ 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 학교별로 「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구성
 -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계획위원, 실행위원, 평가위원 등을 두며, 인원은 학교의 실정에 따른다.
 -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봉사활동 업무담당 부장으로 하며, 각 위원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임무
 - 위원장은 학생봉사활동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학생봉사활동 업무를 총괄한다.

- 계획위원은 학생들이 전 영역에 걸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상기관, 지역사회 여건, 학교교육과정, 활동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년별 단계에 맞게 활동계획을 수립한다.
- 실행위원은 봉사활동 영역별·학년별 발달단계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 평가위원은 평가계획 수립, 평가방법 연구, 결과분석 업무를 담당한다.

○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운영

- 「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한다.
- 「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봉사활동 유관기관 및 단체와 그 소속의 학부모, 지도자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교육청, 유관기관, 학부모, 그리고 지역 주민과 정보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를 조직·운영한다.
- 「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관련단체, 봉사활동 수혜기관, 봉사활동 대상이 되는 각종시설, 문화재 등의 실태를 분야별로 조사·파악하여 활용한다.
-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가 학생봉사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학생봉사활동 시행 전에 반드시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전교육에는 봉사활동의 필요성, 활동영역, 실적 인정기관 범위 등의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학교별·학년별로 봉사활동 영역과 시간을 단계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한다.
- 봉사활동의 다양화를 위해 유관 단체와 효율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 봉사활동 계획 수립, 학생봉사활동 지원 방법, 봉사활동 실적 인정(봉사활동 장소, 봉사활동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된 사항은 협의록에 기록한 후 비치하여 활용한다.

□ 봉사활동 연수

○ 교사 연수

- 학교에서는 학년 초 학생봉사활동 지도에 관한 연수를 1회 이상 실시한다.
- 연수 내용에는 봉사활동의 필요성, 프로그램에 따른 지도 방법, 인정범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문제점에 대한 예방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학생봉사활동 업무담당 교사는 봉사활동 관련 연수에 적극 참여하며 계속적으로 학생봉사활동 질 관리에 힘써야 한다.
- 사제동행 봉사단 활동을 확대 추진하여 나눔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확산한다.

○ 학부모 연수

-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생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 학부모가 솔선하여 가족봉사단을 구성하여 활동에 동참하도록 안내한다.
-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대상 각종 회의 시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 학생 사전교육

- 봉사활동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매 학기 초 학년별 발달 단계에 따른 지도 계획을 세워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사전교육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 전체·학년별·학급별·그룹별로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다.
- 사전교육에는 학생봉사활동의 필요성, 봉사활동 규정, 학교별 봉사활동 계획, 활동영역, 영역에 따른 활동 내용, 개인별 봉사활동의 절차 및 유의 사항, 인정범위, 평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전교육 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단, 사전교육은 매 학기 초에 봉사활동 지도 계획을 세워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 봉사활동 지도교사의 역할

○ 봉사활동 업무담당 교사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운영계획 수립
- 학년별 단계에 알맞은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교 전체의 가족봉사, 사제동행 봉사 관련 계획 수립·운영
- 봉사활동 관련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계획 수립 실시
-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 운영, 소양교육 주관
- 평가 및 사후 관리

○ 학급담임 교사

-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계획 및 관리 운영
- 학급 학생들의 봉사활동 계획, 검토, 관리
- 학생 개개인의 봉사활동 실시 상황 수시 점검·지도
- 봉사활동 확인서 등 봉사활동 결과 점검 평가
- 봉사활동 확인서 누가 기록 관리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에듀팍 봉사활동 내용 확인 후 승인

○ 봉사활동 지도 교사

- 학급, 동아리 등 그룹 차원의 봉사활동 계획
- 봉사활동 현장 입장 지도
- 자발적인 활동을 위한 지도 조언
- 사후 평가 및 추수 지도

□ 봉사활동 평가

-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실무담당자의 실인도 인정한다. 다만, 실인으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는 학급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으로 조치할 수 있다.)
- 학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봉사활동의 실적은 학교장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학교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물론, 개인에 의한 봉사활동까지 그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 학년 초에 시행하는 봉사활동 관련 사전교육은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봉사활동 1시간으로 인정한다.
- 봉사활동 사전 교육만 실시한 경우는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되, ‘활동내용’란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동일 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할 수 있다.)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봉사활동의 적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단순한 선행활동이 봉사활동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시·도간 전학 시, 타 시·도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봉사활동 실적은 우리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적교의 실적을 인정한다.
- 타 시·도로 전출하는 학생에게는 해당 시·도의 봉사활동 규정이 우리도의 규정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자세히 안내한다.(전출 예정교에 확인)
- 영리 업체, 미성년자 출입 제한 업소 등은 봉사활동 대상에서 제외한다.

- 시간 부풀리기, 허위 확인서, 행사에 학생을 동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실적 인정의 판단이 애매한 경우는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실적 인정 여부를 판정한다.
(교육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며, 협의 내용은 반드시 협의록에 기록하여 결재·보관한다.)
- ※ 개인에 의한 봉사활동은 사전 계획서를 승인할 때 학급담임교사나 업무담당교사와 사전 상담을 통하여 봉사활동을 지도하여 봉사활동 후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학생 수준에 맞는 대체 프로그램 운영 또는 예외 인정(중증장애학생 면제) 등 장애학생 봉사활동 배려 규정을 마련한다.

VI.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자원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기관·단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
-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공공성, 비영리성),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인정시간을 실제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는 등의 행위 금지

□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증 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토, 공휴일)
인정시간	2시간	8시간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면 1시간,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인정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 출발	도착	귀가
인정			활동인증대상시간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기준

○ 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

○ 문화공연 준비: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연습시간은 인정

※ 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 번역: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 행사참여: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참여는 불인정

※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 물품 및 현금기부 등: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증할 수 없음

예)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 학생의 헌혈 자원봉사 시간 인정: 헌혈(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 인정 횟수 전혈 5회, 성분헌혈 24회 이내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 인정: 선플 작성 최대 12시간 인정(초 40자 이상, 중 50자 이상, 고 60자 이상으로 20전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 시·도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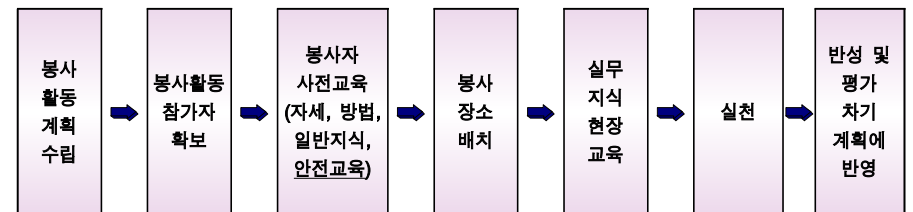
○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 단위 학교별 봉사활동 장소 및 지정 기관을 학생, 학부모에게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사전 안내 필요

□ 학생봉사활동 절차

1.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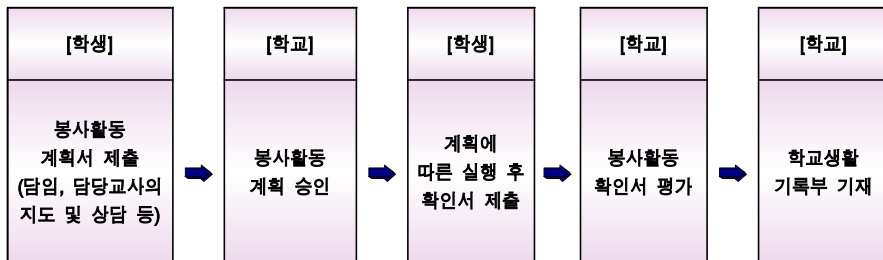
<지도과정>

단계	활동요소	활동내용	비고
계획 수립	봉사활동 목록작성	봉사활동 대상 조사, 봉사활동 내용선정	
	봉사활동 계획수립	목표설정, 활동계획 수립, 평가계획	
참가자 확보	활동참가자 확보	봉사활동 참가자 확보 - 희망조사 및 역할 수행 내용 안내, 참가자 확보	
사전 교육	활동 전 교사 연수	봉사활동 전 지도 교사 연수	교사 학생 구분
	활동 전 학생연수	봉사활동 전 학생 교육 실시	
장소 배치	배치 및 역할 점검	봉사활동 전 장소 배치 및 역할 수행 내용 점검	
현장 교육	현장교육 실시	현장 상황 및 활동상의 유의점 설명	
실천	봉사활동 역할 분담	봉사활동 내용 역할 분담	
	봉사활동 실천	봉사활동의 실행	
	봉사활동 지도	봉사활동의 진행 지도 및 감독	
	유사시의 대책	봉사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봉사활동 기록유지	봉사활동 내용 기록	
평가	반성 및 토의	활동 내용 결과에 대한 반성 협의	
	인정 및 격려	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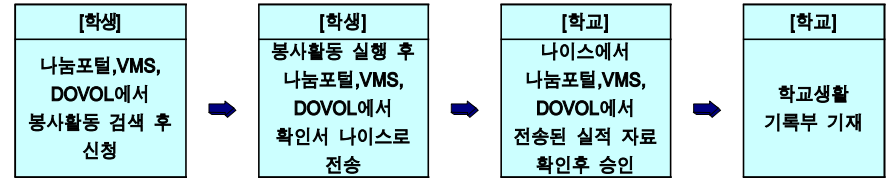
2.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나눔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지도과정>

단계	활동내용 및 방법	비고
사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준비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봉사활동 각 영역과 영역별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 봉사활동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인지 점검한다. *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수칙을 교육한다. 	
계획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대상과 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봉사활동 대상을 찾아보고 기관을 답사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 봉사활동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다. *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한다. 	
계획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계획은 봉사활동 지도교사 및 학급 담임교사와 사전에 협의한다. * 개인적인 봉사활동계획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봉사활동을 실행한다. * 봉사활동을 통한 학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 취미와 적성에 맞는 체험학습의 기회로 활용하고 봉사활동이 습관화·내면화되도록 지도한다.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 실행 후 그 내용을 기록한다. * 학생은 대상기관에서 발부한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 학급 담임교사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수집·정리하고 평가한 후 추수지도를 실시한다. 	

Ⅶ.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협조 사항

□ 봉사활동 인정기준 마련

- 초·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에 관해 학교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기준을 참고하여 자체 기준 마련
 - 단위학교의 학생 봉사활동 실적 인정은 도교육청 인정 기준에 따라 자체 기준 및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운영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여부는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

□ 학생 봉사활동 지역협의체 구축·운영

- 학생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교육지원청-자원봉사센터-청소년활동진흥원-사회복지협의회) 협력체제 구축·운영
- 봉사활동 인정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여 교육지원청, 학교 홈페이지에 봉사활동 인정 기관 안내
- 자기 주도적 봉사활동, 가족 단위 봉사활동, 사제동행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생 봉사활동의 의의, 방법, 유의점, 절차 등에 대한 교육 및 자원봉사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전 안내하여 학생 봉사활동 인식 제고

□ 학교 중심의 봉사활동 활성화

- 학교봉사활동 추진 위원회 구성·운영 및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기록 기재 관리 철저히 학생 봉사활동에 신뢰도 제고
- 학교 중심의 봉사활동 우수사례·안내자료 제작·배포 및 장학지도
-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관과 연계 강화
- 「학생 주도 봉사활동 길잡이(프로젝트 봉사활동)」를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 봉사활동의 주체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려는 각종 행사, 허위·편법 확인서 발급 등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

붙임 1

봉사활동 각종 서식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인 적 사 항	학 교	
	학년 및 성명	
활 동 기 간	201 년 월 일 요일 ~ 201 년 월 일 요일 ()일간 봉사활동 시간 : 총 ()시간	
대 상 기 관		
활 동 장 소		
활 동 내 용		
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성 명 : (인)		

봉사활동 확인서

- 인적 사항
 - 학교명 :
 - 학 년 : 반 : 번호 :
 - 성 명 :
- 봉사활동 기간 : 201 년 월 일 시 ~ 201 년 월 일 (일간)
봉사활동 시간 : 총 시간(00시 00분 ~ 00시 00분)
- 봉사활동 장소 :
- 봉사활동 영역 :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연환경 보호활동() 캠페인 활동()
- 봉사활동 내용 :
- 확인 기관장 명 : 전화 :
- 확인자 직책 : 성명 : (인)

봉사활동 기록표

활동 일시 및 시간	기간: 201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총 ()시간				
활동 장소(기관명)					
활동 내용					
활동 상황					
학년	반	번호	이름	참가 여부	특기사항
확 인 란			지도교사 성명 (인)		

학생봉사활동 카드

- 학 교 : 학년 : 반 : 번호 :
 성 명 : 담임성명 : (인)

월/일	활동 장소 (전화번호)	봉사활동 영역 (봉사활동 내용)	활동 시간	확 인	
				확 인 기관명	확인자의 직위 성명 및 날인

봉사활동 실적 누가 기록부

- 학 교 : 학년 : 반 : 번호 :
 성 명 : 담임성명 : (인)

일자 또는 기간	봉사활동 영역	봉사활동 내용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시간	누계 시간
특 기 사 항					

붙임 2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시간 인증 기준

【봉사활동 기관에서 활동영역 구분 입력 방법】

지역사회봉사활동, 자연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으로 구분하여 입력

활동영역	세부유형	세 부 내 용	권장 시간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사회 개발발전	집짓기, 수리 보조(전기 및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도색 등)	6시간
		공동체 마을만 들기, 아파트 공동체 실천활동, 주민자치활동	4시간
		농촌봉사활동, 텃밭 가꾸기	4시간
		알뜰시장 및 베품시장 봉사활동	4시간
		지역사회 바자회	3시간
		꽃길 가꾸기, 놀이터 보수활동	4시간
		지역행사 지원활동	6시간
		기타 지역사회분야 봉사활동	
	문화, 관광, 예술, 체육 진흥	문화재·관광 가이드, 문화해설	4시간
		문화예술시설 견학안내	3시간
		문화, 예술, 체육행사 지원활동	4시간
		기타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분야 봉사활동	
	민주시민 사회구현	여성차별개선활동, 아동인권보호활동	3시간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활동	3시간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분야 봉사활동		4시간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분야 봉사활동		4시간	
선거관련 봉사활동		4시간	
기타 민주시민사회구현 분야 봉사활동			

활동영역	세부유형	세 부 내 용	권장 시간
	민원안내, 업무보조	공공기관 내 민원 안내, 사무협력, 서가정리	3시간
		장애인 및 노인 민원 접수 보조 및 안내	4시간
		병동내 및 재가세대 대상 도서대출 및 회수	3시간
		헌혈자 접수 및 안내	4시간
		김장김치 만들기	4시간
		나들이 보조	4시간
		노인·장애인 수발	4시간
		노인 놀이, 말벗 봉사	3시간
		도시락, 밀반찬, 물품 배달	4시간
		급식소 봉사활동	4시간
		보육, 음식조리	4시간
		사무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 보조	4시간
		청소, 빨래, 주변환경 정리	4시간
		식사보조	4시간
		목욕 봉사활동	4시간
		체육 보조활동	4시간
		국제기구 및 단체 지원활동	4시간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행사 지원활동	4시간
		기타 사회복지분야 공공행정 사무지원봉사활동	
	일손돕기 재능나눔	요리(제과제빵 포함)	4시간
		이·미용 봉사활동	4시간
		통·번역 봉사활동(A4용지 10페이지 기준)	3시간
		영정사진촬영 및 제작지원	4시간
		장애우 점자입력 봉사활동(A4용지 10페이지 기준)	3시간

활동영역	세부유형	세 부 내 용	권장 시간
	문화,관광, 예술,체육 진흥	문화체험, 취약아동 대상 수련활동 보조지도	4시간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서 (보조)지도자 활동	4시간
	교통 안전 활동	등하교 횡단보도 지도	4시간
		교통안전교육 지도	4시간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	4시간
		기타 범죄 예방, 교통질서, 청소년 육성·보호 선도 봉사활동	
	지도활동 재능나눔	멘토링(멘토링사업 참가자) 활동	4시간
		학교 교과목과 관련된 학습지도	4시간
		교육관련 지도활동(예술, 컴퓨터, 언어 등)	4시간
		기타 교육상담 분야 봉사활동(또래중재, 상담 등)	
	위문공연 재능나눔	교도소, 감호소 위문(공연)활동	4시간
		공연 봉사활동	4시간
	재난관리, 구호활동	피해복구활동	6시간
		피해복구참여자 대상 급식활동	6시간
		피해지역 현장사무소 업무보조	6시간
		북한동포돕기 활동	4시간
		재해예방교육 보조지도	2시간
		피해지역모니터활동	2시간
		기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분야 봉사활동	
	기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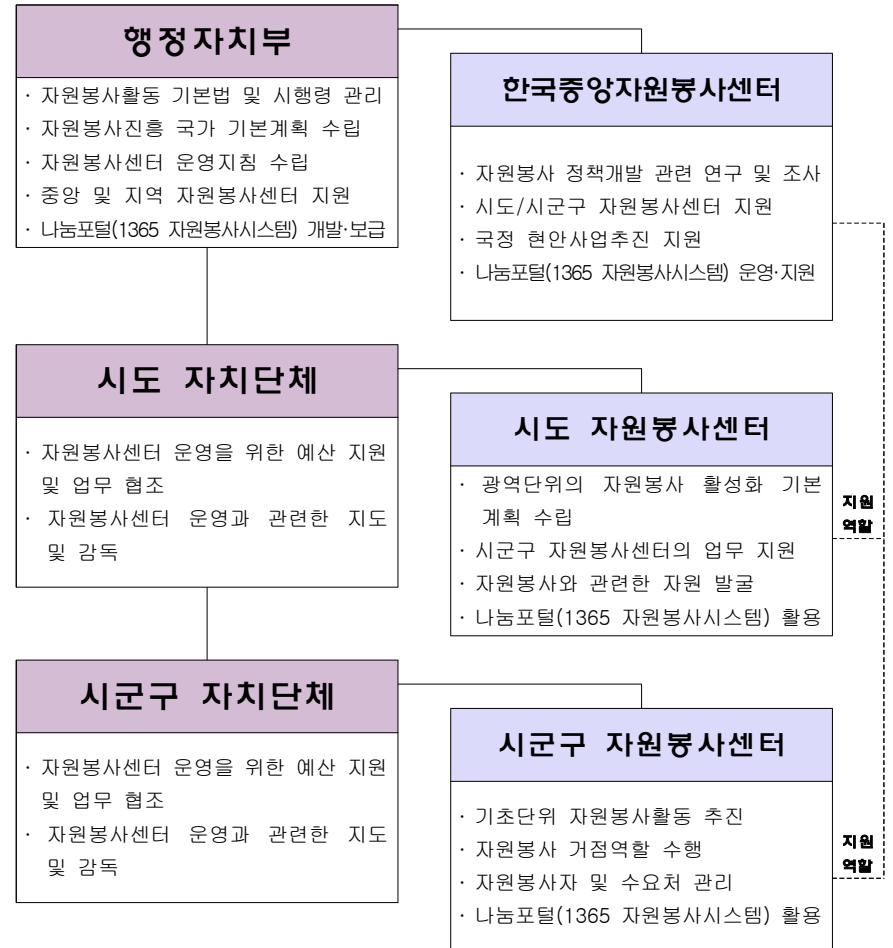
활동영역	세부유형	세 부 내 용	권장 시간
자연환경 보호활동	환경보호, 시설정비 활동	환경정화활동, 재활용품 수거 및 분류	4시간
		문화재지역 환경정화활동	4시간
		기타 환경보전(자연보호)분야 봉사활동	
	환경감시	환경 보호 모니터링	4시간
	기타활동		
캠페인 활동	의식개선 활동	모금활동 및 후원 캠페인	4시간
		헌혈 거리캠페인	4시간
		청소년 보호 관련 캠페인 활동	4시간
		북한동포돕기 캠페인	4시간
		부정주차금지 캠페인	4시간
		대민안전캠페인 및 재난재해모금 캠페인	4시간
		청소년유해업소 추방 캠페인활동	4시간
		의식계몽활동, 소비자보호 캠페인활동	4시간
		문화재보호 캠페인	4시간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캠페인(1년 12시간 이하)	1시간	
	헌혈	헌혈	4시간
	기타활동		

※ 시간인증의 공정성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인증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하되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서 자율 결정

붙임 3

봉사활동 추진체계

□ 중앙 - 광역 시도 - 시군구



붙임 4

자주하는 질문(Q & A)

【문 1】 사설기관에서의 봉사활동도 인정 가능한가?

- 민간 기관이나 시설도 봉사활동이 가능하나,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여야 함.

【문 2】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으로 인정 할 수 있는가?

- 단순 기부활동은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 할 수 없음. 다만,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경우는 인정 가능함.

【문 3】 학생봉사활동 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1일 8 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인정 할 수 있나?

- 학생봉사활동 추진 위원회는 예시나 기준이 없어 봉사활동 인정이 애매할 경우에 판단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부 지침을 벗어나 인정할 수 없음.

【문 4】 교육기관에서 평일 행사에 체험학습(출석인정)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가?

- 수업시수로 반영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봉사활동 인정 가능 하며, 행사에 따른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만 인정

【문 5】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시간 인증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시간 인증 기준표는 1일 권장 사항이므로, 봉사활동 실적 등록 절차는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문 6】 6교시 이후에 헌혈차가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이 헌혈을 하였을 경우 인정 시간은?

-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시간 인증 기준'에 따라 4시간 인정

【문 7】 봉사활동 시간에서 분단위의 기록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단위는 절사하여 기록함(단, 같은 종류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에 합산 가능)

【문 8】 학교행사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예정된 학교행사에 봉사활동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시행함.
- 학교 내 행사와 관련하여 일부 학생에게 청소나 뒷정리를 시킨 후 봉사활동 인정이 가능(단,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행사일 경우)
- 학교행사(현장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가 있는 날은 행사 종료 후 일정시간(일거리 양에 따라 학생 수를 감안하여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명 ○시간씩)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음.

【문 9】 부적절하게 인정된 봉사활동 사례는?

- ①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② 장애인이 출연하는 공연 관람하기
- ③ 문예작품(그림,글짓기) 공모전 응모 ④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 ⑤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⑥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여 봉사활동 ⑦ 봉사활동을 빙자한 수익사업 운영에 참여 사례 등 봉사활동 인정 불가

【문 10】 학교급별로 학생 개인당 1년 간 봉사활동의 권장 시간은?

- 초등학교는 연간 10시간 이상을, 중·고등학교는 연간 20시간(3년 간 60시간) 이상을 권장함.

【문 11】 학교에서의 일상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인정할 수 없음. 예를 들면 교실 청소 및 환경미화, 특별실 청소 등 학교에서 일상적인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단, 학교장이 연간 봉사활동계획을 세워 운영하는 학교 내·외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음.

【문 12】 교내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과 시간은?

- 학교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청소, 식사보조 등)이 아닌 학교행사나 특별한 내용일 경우 학년 초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결재와 활동기록부 비치로 인정 가능하며, 인정할 수 있는 봉사활동 시간의 제한은 없음.

【문 13】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동아리활동 시간에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활동할 경우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나요?

- 인정할 수 없음.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다만, 동아리활동 부서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세워 동아리활동 부서활동과 별도의 시간에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라면 인정할 수 있음.

【문 14】 징계 관련 학생 선도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을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선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 학생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에 의한 봉사활동실적은 인정할 수 없음).
- 이외에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문 15】 학생 봉사활동 실적 누가기록부 작성 및 확인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학생의 봉사활동실적을 누가기록부에 매번 기록하는 대신 나이스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상황]-[봉사활동누가기록]에 입력하고, 학년말에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상황]-[봉사활동누가기록조회]에서 출력하여 결재를 득한 후 봉사활동 확인서와 함께 보관하여도 됨(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 결정으로 가능함).

【문 16】 졸업식 이후에 실시한 봉사활동을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1·2학년은 졸업식 이후 봉사활동이 인정되지만(2월까지의 당해 학년도에 해당됨),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문 17】 봉사활동 확인서는 실무 담당자의 실인으로도 인정 가능하나요?

-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무담당자의 실인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실무담당자의 실인으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학급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으로 조치할 수 있음.

【문 18】 봉사활동 확인서, 봉사활동 기록표, 학생 봉사활동 카드는 각각 어떻게 다르나요?

- ‘봉사활동 확인서’는 학생이 개인별로 실시한 봉사활동실적을 해당 기관에서 기록하여 발급하도록 준비한 양식이며, 봉사활동 확인서 대신 ‘학생 봉사활동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 ‘봉사활동 기록표’에는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실적과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의 기록을 작성하고, 학생 개인별 확인서를 일일이 작성하지 않고 활동 집단별(학급별 또는 소그룹별)로 일괄 작성할 수 있음.

【문 19】 개인적인 봉사활동을 할 때 학교장의 추천(허가)을 받아야 하나요?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실적으로 입력할 수 있음.
- 해외봉사활동은 학교계획이나 학교장 승인이 있다고 하여도 학생생활기록부나 에듀팍에 기록할 수 없음.

붙임 5

Dovol(두블)-나눔포털 봉사활동 실적 연계 안내자료

□ **시스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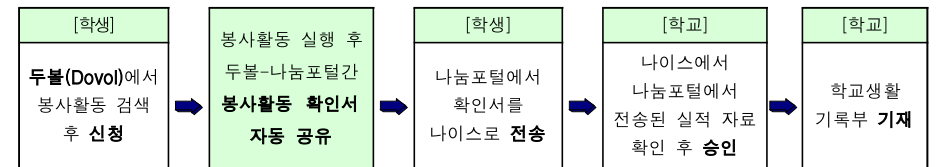


□ **연계 개요**

- '14. 7.27(수)부터 “두블-나눔포털-나이스” 봉사활동 실적 연계 서비스 실시
- 두블에서 '14. 3. 1(토)부터 참여한 봉사활동만 나이스로 전송 가능

□ **안내 및 요청사항**

- 두블을 이용하는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음.**



- 담임 교사는 나이스에 **직접 등록된 봉사활동 실적과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실적이 중복 기재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을 요망
- 두블 혹은 나눔포털에서 참여한 봉사활동 내역을 학생이 나이스에 전송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요청

※ 봉사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나이스로 자동 전송되는 것으로 잘 못 인지하는 사례 발생